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태열 (외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부대표로 임명되어 재임하는 기간을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의 대상이 되는 무보직 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고위외무공무원 무보직 사유에 정부대표 임명 추가 (안 제26조의2)

나. 정부대표 재임기간을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무보직 기간에서 제외 (안 제26조의3)

- 「국가공무원법」의 무보직 관련 조항에 맞춰 조문 정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부대표로 임명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
제26조의3제1항 중 “제4호까지”를 “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6호”로,
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의2제1항제3호”를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4호까지”를 “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6호”로 하며, 같은 항,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의2제1항제3호”를 각각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의2(보직관리의 기준) 외교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소속 고위외무공무원을 하나 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 여야 한다.	제26조의2(보직관리의 기준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	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「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」 <u>제5조제1항에 따라 정부대표</u> <u>로 임명하여 직무를 수행하게</u> <u>하는 경우</u>
제26조의3(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) ① 제26조의2제1 호부터 <u>제4호까지</u> 의 사유로 직 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<u>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의2제</u> <u>1항제3호</u> 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.	제26조의3(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) ① ----- ---- <u>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6</u> <u>호</u> ----- <u>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의2제</u> <u>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</u> -----.
② 제26조의2제1호부터 <u>제4호</u> <u>까지</u> 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고위공 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	② ----- <u>제4호까</u> <u>지 및 같은 조 제6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직위의 공모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.

③ 제26조의2제3호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날부터 소급하여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. 다만,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.

④ 제26조의2제5호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. 다만, 「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」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

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

③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

④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

이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. ⑤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외교부 인사기획관	
연 락 처	(02) 2100 - 7152